

## 아세안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인정 및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안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적용대상 - 한-아세안 FTA

- 대상 국가: 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11개국)

### II. 합의내용

#### 1.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아세안국가에서 수입신고 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 가능
  - \* 인정되는 사본: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 ([붙임 1 참조](#))
-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시점은 추후 별도 논의 예정

#### 2.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여타 수입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음.
- 수출기업이 아세안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의 사소한 차이, 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 ([붙임 2 참조](#))
- 아세안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최신현황 파악 ([붙임 3 참조](#))

##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아세안국가의 코로나기간 중 CO 사본인정 조건
- [붙임2] 아세안국가와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
- [붙임3] 아세안국가의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현황 조건

## | Contact



강민주 관세사  
T 02-6011-3073  
E mjkgang@esein.co.kr



이하나 관세사  
T 02-6011-3035  
E hnlee@esein.co.kr



성단샘 관세사  
T 02-6011-3021  
E dsseong@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